

## 2024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2024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27일

### 대전광역시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4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 가구
  - ※ 청년 연령의 무주택자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자
  - ※ 대상 가구의 신청자는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2024년 5월 ~ 2025년 4월 납부한 월세 지원)
  -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예시) 월 임차료 15만원은 월 15만원 지원 / 관리비 등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4. 4. 1.(월) ~ 4. 12.(금)
  - 선정인원 : 1,500명
  - 선정방법 :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선정발표 : 2024. 5. 29.(수) 17:00 예정
  - 지급방법 : 매월 본인 계좌 입금 (첫 지급 : 6월 예정)

#### 2. 신청 자격·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연도 기준 1984~2005년)
    - 생년월일 1984. 1. 1. ~ 2005. 12. 31. 까지 신청 가능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단,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24년 1월 보험료)이 '24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만 심사
- ※ 필요 시 기준 월 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양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양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심사
- ※ 각 세대원이 건강보험 별도 가입 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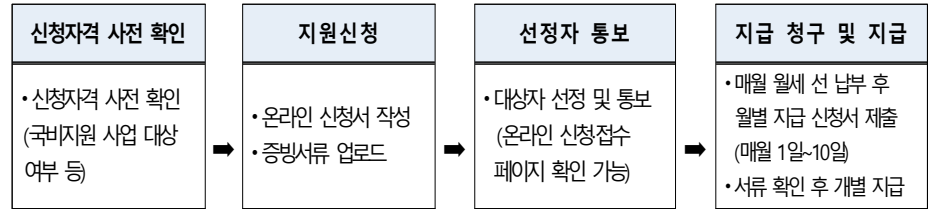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초과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대전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대전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참여자, 청년하우스 거주자 등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12.(금)
- 신청인 : 임차인 본인
- 신청방법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신청 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 지원금액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최대 240만원) ※생애 1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지급방법 : 월 임차료 선(先) 납부 후 선정자 본인이 매월 월세 지급 신청,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0일
  - 선정자 이행사항 : 6. 1. ~ 6. 10.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
    - ※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10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 신청
    - 예시) 5월 월세 납부 후, 6월 1~10일 지급신청 기간 내 5월 월세 지급 신청
    - 6월 월세 납부 후, 7월 1~10일 지급신청 기간 내 6월 월세 지급 신청
    - ※ 기간 내 미신청한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다름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첫 지급 : 6월 25일 지급 예정
  - 지급일자가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 기간 내 미신청한 월세 지원금 지급일 다름

○ 대상자 선정 후 제출 서류

- ① 월세 지급 신청서(온라인 작성)
- ②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1부** ※ 단순 거래내역조회 불가
  - 임차인명, 임대인명, 납부금액, 납부일자, 입·출금계좌 모두 명시 필수
- ③ 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1부 ※ 수취불가 계좌는 등록 불가
  -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하는 지급계좌 정보와 동일한 계좌의 통장 사본

선정자 이행 사항	신청 기간	지급일
'24. 5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4. 6. 1. ~ 6. 10.	매월 25일
'24. 6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4. 7. 1. ~ 7. 10.	
'24. 7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4. 8. 1. ~ 8. 10.	
'24. 8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4. 9. 1. ~ 9. 10.	
'24. 9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4. 10. 1. ~ 10. 10.	
'24. 10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4. 11. 1. ~ 11. 10.	
기한 내 미신청한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4. 11. 20. ~ 11. 25.	2024. 12. 10.
'24. 11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4. 12. 1. ~ 12. 10.	매월 25일
'24. 12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1. 1. ~ 1. 10.	
'25. 1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2. 1. ~ 2. 10.	
'25. 2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3. 1. ~ 3. 10.	
'25. 3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4. 1. ~ 4. 10.	
'25. 4월분 월세 납부 후 지급 신청	2025. 5. 1. ~ 5. 10.	
기한 내 미신청한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2025. 5. 20. ~ 5. 25.	2025. 6. 10.

4.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 3. 27.) 이후의 발급분만 인정 가능하며**, 미리보기 및 열람용이 아닌 정식 발급본(출력본) PDF 파일로 제출
- 서류 미비자에게는 추가 서류 요청(단, 1회만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계없이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구분	서류명	비 고		
온라인 작성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포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 세대 구성원 신청서 출력 후 서명하여 첨부		
	3. 지원서약서			
공통 제출 서류	4.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 포함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a href="http://www.gov.kr">www.gov.kr</a>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기준 발급 •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 추가 발급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a href="http://efamily.scourt.go.kr">efamily.scourt.go.kr</a> ) - 행정복지센터	
	6.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본인 기준 '23~24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1부 • 주택분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증명서와 함께 해당 과세물건 매매여부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 배우자, 형제·자매 세대원 모두 제출	• 전국단위 발급은 <b>오프라인으로만</b> 발급 가능 (통당 수수료 800원 부과) - 구청(세무부서) - 행정복지센터  • 방문시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본인·대리인 신분증 본인도장 날인된 위임장	
	7.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기준 전체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a href="http://nhis.or.kr">nhis.or.kr</a> )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8.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본인에게 포함된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하여 제출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 1월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기준 납부확인서 제출		
	10.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서명(인) 필수) •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FAQ 참고  (기속사생) • 생활관비 납입 증명서 및 거주 사실 확인서 (입실확인서)		

## 5.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1,500명
- 선정방법 :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 우선 선발(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소득 산정기준 : 2024. 1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임대료 산정기준 :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3.5%÷12개월)+월세

예시)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인 경우,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 시  
- 보증금 월세 환산액(5천만원×3.5%÷12개월) + 월세 40만원 = 545,833원

\* 2024. 1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 금리

## 6. 선정 발표

- 발표일: 2024. 5. 29.(수) 17:00 예정
- 방 법: 월세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접속 확인, 개별 문자발송

## 7. 선정자 의무사항

-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매월 '지급 신청서' 제출
  - ※ 선정자 신청 기간 내 별도 신청, 문자발송 선택적 제공
-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서'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 신청서' 제출

## 8. 지원 중지 사유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등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市)로부터 주거 지원 또는 전월세보증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9. 기타(유의) 사항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등과 중복지급 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FAQ(자주 묻는 질문)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이후 제출한 서류 및 정보 수정은 불가하며,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고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의 허위·착오, 보완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 받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1~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FAQ 1부. 끝.